

제주지방법원 2020. 8. 13 선고 2020가단86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법정대리인(성년후견인) B

1. C
2. D (개명 전 E)

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좌혜선

변론 종결 2020. 7. 16

판결 선고 2020. 8. 13

주 문

1. 피고들은 각 1/2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,가. 별지 1.2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2017. 12. 18. 접수 제128597호로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,나. 별지 3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2017. 12. 18. 접수 제128598호로마친소유권이전등기의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,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연대하여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다툼 없는 사실과 갑제1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피고들과 F·G·H·J은 원고의 자녀들인 사실,각 2019. 12. 14.자 증여를 원인으로 별지 1, 2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2017. 12. 18. 접수 제128597호로, 별지 3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2017. 12. 18. 접수 제128598호로 각 피고들에게 1/2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(이하 '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'라고 한다), 원고는 이미 2017. 8. 9.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은 사실,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제주시 K - L 토지와 제주시 M - N 토지에 관하여도 2017. 7. 26.자 증여 예약을 원인으로 제주지방법원 2017. 7. 27. 접수 제77675호로 F 명의로 가등기된 사실,G이 원고에 대한 성년후견개시 심판 청구(제주지방법원2017느단10170)를 하였는데,그 사건의 심문기일에 피고들과 F이 2019. 6. 30.까지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가등기를 모두 말소하기로 약속한 사실, 그 사건에서 실시한 원고에 대한 정신감정에서 O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P은 2018. 10.24.부터 2018. 11. 3.까지 원고를 관찰하고 중등도 치매로 진단한 사실,제주지방법원은 2019. 4. 30.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하면서 성년후견인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와 F의 가등기 말소 이행 상황을 보고하도록 한 사실,한편 F은 2019. 10.30. 제주시 K - L 토지와 제주시 M - N 토지에 관하여 판결에 따라 가등기말소 절차를 이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

2. 판단

인정사실을 종합하면,원고가 피고들과 2019. 12. 14.자 증여계약을 할 당시에는 알츠하이머병 중이어서 정확한 판단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더구나 제주지방법원2017느단10170성년후견개시 사건에서 피고들 스스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기로 약속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그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(지금은 원고 명의로 되돌려 원고 봉양에 집중하고,상속개시되었을 때 상속인들이

정당하게 상속분대로 분할하는 것이 타당하다).

판사 장창국

별지